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284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소송대리인 C

2. C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0. 망 D(1961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지상 주택 중 1층 방 2개(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1.부터 2017. 11.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소외 F(1934년생)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망인이 2017. 7. 24.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7. 12.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3498호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9. ‘원고는 피고들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1. 13.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7. 12.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7668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2018. 1. 10.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법원 2018년 금제10676호로 8,000만 원을 공탁하고 2018. 5. 9. 같은 법원 2018카기841호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사건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9. 2. 18.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일부금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위 8,000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망인이 아닌 소외 F의 자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망인이 아닌 F이다. 망인은 F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거나, 망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착오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일부금으로 출급한 공탁금 8,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선행판결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확정된 위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